

「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산물가공 공동이용공간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성공적인 가공창업을 지원하고자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명시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목적과 기능(제1장)
-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제2장)
-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및 창업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(제3장~제4장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「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○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¹⁾에 따라 조성된 구미시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(선산읍 이문리 831번지 일원)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14조에서는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사용가능한 원료에 관한 사항으로, 구미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한정함으로써, 구미시 생산 농산물의 소비

1) 제7조(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)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「농촌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및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 다만 관내 생산 농산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방법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안 제23조에서는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, 「농촌진흥법 시행령」 제23조제4항²⁾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. 다만, 제품의 개발에서 끝나지 않도록 판매·유통·홍보 등 전반적인 마케팅 과정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가공기술에 대한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모든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 견학, 체험 운영 학교 등 실제 체험을 통한 체계적인 홍보방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2) 제23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 등)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·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교육훈련 관련 기관

2.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,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